

## 1. 의결주문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(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) 신설 및 시행 예정('21.6.30)에 따라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·지정·운영기준, 방법,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##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

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재활의료
2.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
3. 의지보조기 상담, 처방 및 검수
4. 사례관리
5.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
6. 가족지원 서비스
7. 재활 체육 제공 또는 연계
8. 소아재활 관련 교육·연구 및 지식 전달사업
9.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

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만 18세 이

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재활의료
2.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
3. 의지보조기 상담, 처방 및 검수
4. 사례관리
5.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
6. 가족지원 서비스
7. 재활 체육 연계
8. 소아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
9.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

제13조의3(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·지정·운영기준,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

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정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.

③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·지정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별표 2의2와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 운영기준 (제18조의2 관련)

## 1. 공공어린이재활병원

### 가. 운영 기준

- (1) 의료기관 종별 :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병원 또는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
- (2) 필수 진료과 : 재활의학과, 소아청소년과, 치과
- (3) 필수 재활치료 : 물리치료, 열전기치료, 수치료, 작업치료, 일상생활 동작훈련, 인지치료, 연하훈련, 언어치료, 임상심리치료
- (4) 운영방식
  - (신설)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병원 설립 후 직접 운영,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운영을 위탁
  - (기존 의료기관에 설치) 기존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 후 위탁

### 나. 시설 기준

- (1)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다른 시설(공간)과 독립·구별되도록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(2) 병상 : 입원 병동과 낮병동에 5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. 단, 입원 병동에는 3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.
- (3) 외래 진료실 : 재활의학과를 3실 이상, 소아청소년과 및 치과를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4) 재활 치료실 : 필수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, 작업치료실, 열전기치료실, 언어치료실, 수치료실, 조기집중치료실, 재활심리치료실, 보조기제작체험실, 로봇치료실, 호흡재활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5) 검사실 : 진단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선실, 임상병리실, 근전도검사실, 근골격계초음파검사실, 심폐기능검사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6) 공공재활서비스 관련 실 및 기타: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사업실, 교실(병원학교), 교육실, 상담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하며, 병원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.
- (7)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치료실, 조기집중치료실, 보조기제작체험실, 방사선실, 임상병리실, 근전도검사실, 근골격계초음파검사실, 심폐기능검사실은 기존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겸용이 가능하다.

### 다. 장비 기준

나목에 따른 물리치료실·작업치료실·열전기치료실·언어치료실·수치료실·재활심리치료실·보조기제작체험실·방사선실·심폐기능검사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장비를 두어야 한다.

### 라. 인력 기준

- (1) 의사 :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명 이상, (소아)치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2) 간호사 : 병상 수 4개당 간호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3) 의료보전직 : 물리치료사 20명 이상, 작업치료사 16명 이상, 언어재활사 4명 이상, 사회복지사(1급)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, 임상심리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의지보조기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4) 사무직 : 원무, 심사,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을 7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5)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3조의 2)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공공사업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.
- (6)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과 소아청소년과, (소아)치과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의지보조기사, 행정인력은 기존 병원 소속 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다.

마. 시설·장비·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## 2.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

### 가. 운영 기준

- (1) 의료기관 종별 :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의원 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병원 또는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
- (2) 필수 진료과 : 재활의학과
- (3) 필수 재활치료 :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일상생활 동작훈련, 인지치료, 연하훈련, 언어치료
- (4) 운영방식

- (신설) 해당 지자체가 직접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립 후 직접 운영,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운영을 위탁
- (기존 의료기관에 설치) 기존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 후 위탁

#### 나. 시설 기준

- (1)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다른 시설(공간)과 독립·구별되도록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(2) 병상 : 낮병동에 2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. 단, 입원 병동에 병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
- (3) 외래 진료실: 재활의학과를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4) 재활치료실: 필수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, 작업치료실, 언어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5) 공공재활서비스 관련 실: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사업실(행정실), 교육실(회의실), 상담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
#### 다. 장비 기준

나목에 따른 물리치료실·작업치료실·언어치료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장비를 두어야 한다.

#### 라. 인력 기준

- (1) 의사: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2) 간호사: 낮병동, 외래진료실에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
- (3) 의료보전직: 물리치료사 5명 이상, 작업치료사 5명 이상을 두고, 언어재활사 및 사회복지사(1급)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4) 사무직: 원무, 심사,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5)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3조의 2)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공공사업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.
- (6)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인력은 기존 병원 소속 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다.

마. 시설·장비·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의3] <신설 2021. 6. 30.>

###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정 운영기준(제18조의2 관련)

#### 1. 공공어린이재활병원

##### 가. 운영 기준

- (1) 의료기관 종별 :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병원 또는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
- (2) 필수 진료과 : 재활의학과
- (3) 필수 재활치료 : 물리치료, 열전기치료, 작업치료, 일상생활 동작훈련, 인지치료, 언어훈련, 언어치료, 임상심리치료

##### 나. 시설 기준

- (1)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다른 시설(공간)과 독립·구별되도록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(2) 병상: 입원 병동과 낮병동에 5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. 단, 입원 병동에는 1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.
- (3) 외래 진료실: 재활의학과를 3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4) 재활치료실: 필수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, 작업치료실, 열전기치료실, 언어치료실, 조기집중치료실, 재활심리치료실, 호흡재활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5) 검사실: 진단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선실, 임상병리실, 근전도검사실, 근골격계초음파검사실, 심폐기능검사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6) 공공재활서비스 관련 실: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사업실, 교실(병원학교), 교육실, 상담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7)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집중치료실, 방사선실, 임상병리실, 근전도검사실, 근골격계초음파검사실, 심폐기능검사실은 기존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겸용 가능하다.

##### 다. 장비 기준

나목에 따른 물리치료실·작업치료실·열전기치료실·언어치료실·재활심리치료실·방사선실·심폐기능검사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장비를 두어야 한다.

##### 라. 인력 기준

- (1) 의사: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2) 간호사: 병상수 4개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
- (3) 의료보전직: 물리치료사 20명 이상, 작업치료사 16명 이상을 두고, 언어재활사

4명 이상, 사회복지사(1급)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, 임상심리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의지보조기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- (4) 사무직: 원무, 심사,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을 7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5)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3조의 2)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공공사업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.
- (6)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의지보조기사, 행정인력은 기존 병원 소속 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다.

마. 시설·장비·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## 2.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

### 가. 운영 기준

- (1) 의료기관 중별 :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의원 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병원 또는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
- (2) 필수 진료과 : 재활의학과
- (3) 필수 재활치료 :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일상생활 동작훈련, 인지치료, 언어훈련, 언어치료

### 나. 시설 기준

- (1)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다른 시설(공간)과 독립·구별되도록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(2) 병상 : 낮병동에 2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. 단, 입원 병동에 병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
- (3) 외래 진료실: 재활의학과를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4) 재활치료실: 필수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, 작업치료실, 언어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- (5) 공공재활서비스 관련 실: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사업실(행정실), 교육실(회의실), 상담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.

### 다. 장비 기준

나목에 따른 물리치료실·작업치료실·언어치료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장비를 두어야 한다.

### 라. 인력 기준

- (1) 의사: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2) 간호사: 낮병동, 외래진료실에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
- (3) 의료보건의료직: 물리치료사 5명 이상, 작업치료사 5명 이상을 두고, 언어재활사 및 사회복지사(1급)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4) 사무직: 원무, 심사,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(5)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3조의 2)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공공사업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.
- (6)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인력은 기존 병원 소속 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다.

마. 시설·장비·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제13조의2(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)</p> <p>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활의료</li> <li>2.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</li> <li>3. 의지보조기 상담, 처방 및 검수</li> <li>4. 사례관리</li> <li>5.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</li> <li>6. 가족지원 서비스</li> <li>7. 재활 체육 제공 또는 연계</li> <li>8. 소아재활 관련 교육·연구 및 지식 전달사업</li> <li>9.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</li> </ol> <p>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|

## <신 설>

1. 재활의료
  2.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
  3. 의지보조기 상담, 처방 및 검수
  4. 사례관리
  5.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
  6. 가족지원 서비스
  7. 재활 체육 연계
  8. 소아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
  9.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
- 제13조의3(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·지정·운영기준, 방법 및 절차)
-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
  -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.
  - ③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·지정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

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
신청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 
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  
위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선정위  
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  
정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 
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  
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 
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       | (044) 202 - 3287 |